

2025년도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따라,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경찰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인공지능 현장 업무적용 확대를 위하여 해양재난 데이터를 AI가 활용^(학습·인식)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디지털전환(DX) 체계 및 서비스 구현
 - * CDX(Coastal_disaster Digital X(T)ransformation) : AI, 빅데이터 등 첨단 미래 기술을 활용 해양에서의 각종 재난사고를 신속·정확히 대응하고 AI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기술

□ 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재난의 대형화, 다양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절적 정보시스템 데이터와 대내·외 다양한 해양 재난 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활용,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및 플랫폼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XR, MDA 등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개인비서) 서비스 구현 등

공모과제

○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고
해양재난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CDX 기술개발	3년 이내 (9개월 이내)	74.1억원 이내 (5.1억원)	2개 과제의 연구개발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CDX 기반 인공지능 융합 핵심기술 개발	3년 이내 (9개월 이내)	23.9억원 이내 (4.9억원)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 2025년도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성과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협의를 통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4.~9.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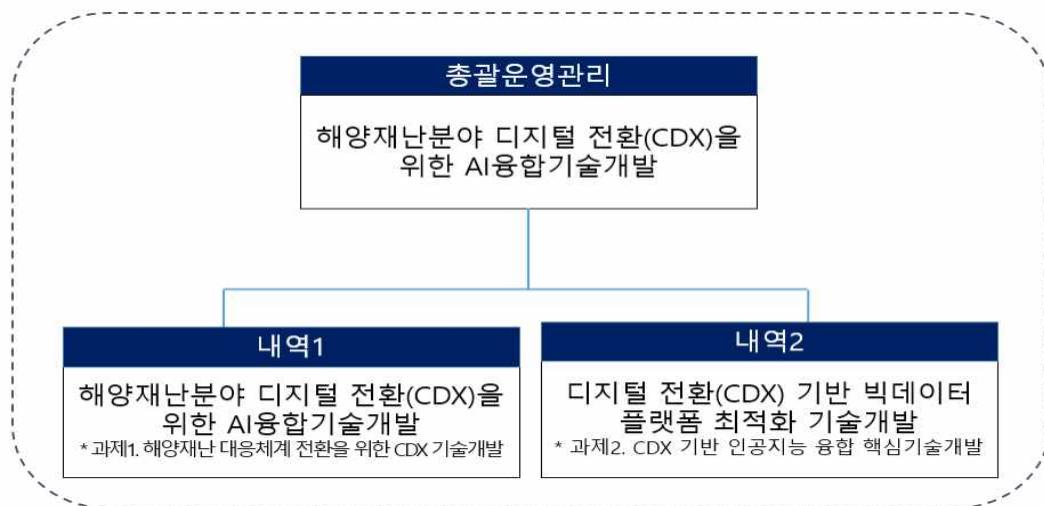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생략)

- 본 사업은 2개 과제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위해 2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할 예정이며,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융합기술개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의 총괄운영·관리를 담당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개별 접수 해야함. 접수 및 선정평가는 각 과제별로 실시하고, 컨소시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함

< 컨소시엄 형태 >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5. 1. 24.(금) ~ 2025. 2. 26.(수) (34일)
- 접수기간: 2025. 2. 12.(수) ~ 2025. 2. 26.(수) 16:00 까지 (15일)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내 R&D 업무 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하는 과제 접수 등 사용자 매뉴얼([붙임5])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마감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접수되며, 마감시한 초과 시 무효처리함
 - *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함
- 과제신청 시, 과제정보입력, 연구자/연구기관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등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수 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접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시스템입력 오류 등 각종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042-862-1500 / 1877-2041, 09:00~18: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사전 준비사항(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iris.go.kr)
 - *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 IRIS 회원가입 후 발급
 - *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 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을 클릭해 국가 연구자번호 전환
 - * 신청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제 신청 및 접수 불가

※ 신청 후 확인 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 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
 -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출서류(서식과 별첨서류로 구분)

No	신청 서류	비고
1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1부 * 첨부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별첨 1~8] 포함 작성(해당 시)	서식 1, 별첨서류 1~8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신규 발급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u>가결산 재무제표</u> 및 <u>신고예정 재무제표</u> 제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내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한다면 확인서를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
4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1부	-
5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6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 3
7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서식 4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9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서식 6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1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1-2023) 재무제표* *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외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법인세 조정신고의 서식으로 제출한 재무제표	영리기관에 한함 (공기업 제외)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본 사업은 2개 과제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위해 2개 과제의 연구 개발기관을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예정임
- 각 과제별로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컨소시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되, 컨소시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탈락처리함
 - 컨소시엄 평가점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과제의 최종종합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임
 - 단, 개별 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가 있는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함
- 각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 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평가상황에 따라 서면·화상 등을 활용한 평가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의견, 결과 및 개발품목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산하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선정평가 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 계획 (40%)	•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1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 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20%)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0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2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성과활용 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계		100

□ 선정절차

절차	내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서 공고하며, 재공고 할 수 있음	1월 ~ 2월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월 ~ 3월
선정평가	○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3월
지원기관 확정	○ 해양경찰청에서 평가결과 및 지원기관 확정 (필요 시, 심의위원회 개최)	3월 ~ 4월
협약체결	○ 선정평가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고 협약체결 진행	4월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재공고 기준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분	참여제한 대상	조치내역
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탈락
	위탁연구개발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탈락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을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을 총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지방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2021~2023)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 * 자본전액잠식 검토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탈락 처리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에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 · 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 · 연구재료비
-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장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수 있다. 다만, 사회 ·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자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장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 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 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해양경찰청에 납부해야함

구분	세부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1.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 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하는 경우	<p>가. (제3자실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3항)</p> <p>나. (직접실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p>			
3.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액	중소기업	기업구분	실시유형	정부납부기술료납부액
		제3자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100
	중견기업	직접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100
		제3자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200
	공기업·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직접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200
		제3자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400
		직접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4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 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③ (생략)

8.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대상기업은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최종 협약('25. 4.) 시, 기관별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원 확정 예정

[적용 예시 1]

구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7억원	8억원	15억원
청년채용 의무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		3명

[적용 예시 2]

구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대학)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7억원	8억원	15억원
청년채용 의무	1명	(해당없음)	1명

[적용 예시 3]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위탁연구개발기관(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9억원	6억원	15억원
청년채용 의무	(해당없음)	1명	1명

9.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 기준)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1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 업종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청년의무채용 및 청년추가채용 참여연구자
 - 그밖에 청장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65조)

10.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장비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제’ 도입('19)·운영 중이며, 해당기관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지정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신청·협약하는 과제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연구시설·장비비)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를 모두 계상 가능

-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를 계상할수 없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제’ 운영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가능
- [붙임 5]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참고자료’의 연구시설 · 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통합관리기관은 연구 시설 · 장비비 계상 가능

11.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서식1-1]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별첨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 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 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음

예시1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예시2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예시3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2.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4.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록,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12.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시스템) 문의	
구분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부서	전화
해양경찰청	해양치안 빅데이터팀	032-835-2870 phymels25@korea.kr	IRIS 콜센터	1877-2041 (09:00~18:00)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해양경찰팀	02-3460-0343 hwangjj@kimst.re.kr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각 1부

[붙임 3] 별첨(붙임 3, 4) 자료 목록

[붙임 4]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별첨서류(1~8) 등 관련서식(별첨)

[붙임 5] 참고 자료(규정, IRIS 매뉴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등)(별첨)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제4항 관련)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 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일	3년	3점
	다.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2점
	마.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점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점
구분	기 준	기준일	점수	
감점부 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 마감 전일	3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해약일 기준	접수 마감 전일	3점	
가.감점 부여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하며,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비고	가.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점을 주지 아니함 나.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간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붙임 2] 과제 제안요구서(RFP)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해양경찰청	사업명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전문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5.4. ~ '27.12. 이내 ('25. 4. ~ '25. 12.)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98억원 이내 ('25년 10억원 이내)
선정방식	지정공모		
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 EE 정보통신 - EE13 재난정보통신 - EE1305 재난상황대응의사결정시스템 2. EE 정보통신 - EE13 재난정보통신 - EE1306 재난지리정보기술 3. EE 정보통신 - EE01 정보이론 - EE0108 인공지능		

1. 제안요구내용

사업명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개요	<p>* CDX(Coastal_disaster Digital X(T)ransformation) : AI, 빅데이터 등 첨단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해양에서의 각종 재난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방식의 대 전환」 기술</p> <p>■ 최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인공지능 현장업무 적용 확대를 위한 해양 재난 정보의 디지털 전환(DX) <p>■ 연구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AI가 활용(학습·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 확장 ○ 대내외 해양재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 구축 및 XR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MDA 플랫폼 등 다양한 연계를 통해 AI 활용 기반 마련 ○ 해양재난 현장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예측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및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p>■ 주요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1)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융합기술개발 <p> (과제1) 해양재난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CDX 기술개발</p> <p>해양재난 대형화·다양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절적 정보시스템 데이터와 다양한 해양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활용·공유(기존 R&D사업, XR, MDA 등)할 수 있는 체계 및 플랫폼 구축</p> ○ (내역사업2)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p> (과제2) CDX 기반 인공지능 융합 핵심기술 개발</p> <p>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및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 개인비서) 서비스 구현·적용</p>

	<p>■ 주요 연구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해양재난 대응체계 구현의 시급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보유 인프라(기존 R&D사업, XR, MDA 등)와 적극 연계 (기반조성) 대내외 해양재난 데이터를 AI 학습,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저장하고, 관련 분야 시스템 등에 공유하는 인공지능 기반(AIOps)의 플랫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능 개선, 추가 등 업데이트와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멀티 에이전트 기반 AI 플랫폼 구축 (확대) 해양재난 분야의 업무별 기능 제공으로 현장 업무에 AI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부서, 사무실에 필요한 상황시나리오별 AI 에이전트 개발 및 보유 장비, 세력 관리 등 현장부서별 상황대응을 위한 기능별 개발(파출소, 함정, VTS 등) (적용·실증) 업무별(개인별) Data 학습을 통한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 개인비서 서비스) 제공 <p>■ 기대효과</p>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해양재난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대국민 해양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수행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으로 해양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한 국민 생활에 기여 (정책적) 개별 시스템에서 필요한 AI서비스를 API형식으로 관련 분야에 제공하여 개별 AI 개발 수요충족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예산 절감에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약 10~20억원 소요 (기술적) 해양재난 분야의 축적된 빅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및 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스마트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기반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치안, 구조, 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대응기관으로서 AI를 통한 효율적인 해양재난 대응체계 구현 (산업적) 빅데이터·AI 기반 체계에 필요한 대량의 해양재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대규모 해양재난 데이터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재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	---

【(내역1)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해양경찰청	사업명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전문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개발
공모방식	지정공모	보안등급	일반과제
연구개발과제명	해양재난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CDX 기술개발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연도)	'25.4. ~ '27.12. 이내 ('25. 4. ~ '25. 12.)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연도)	74.1억원 이내 (25년 5.1억원 이내)
단계 연구개발기간	(1단계) '25.4. ~ '27.12. (2단계) 추후 결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필수 참여기관 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단계	개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정된 자원으로 해양재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재난 데이터 수집·활용 방식의 전환 요구
 - 무인선박 등 新 해양 인프라로 인하여 해양재난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 경찰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필요
- 해양경찰은 해양재난대응 유일의 기관으로,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 함정 등 현장 인원이 부족(정원 대비 12.7%)하여 AI, X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제안요구내용

1) 최종목표

- 해양재난 대형화·다양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분절된 데이터와 다양한 해양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활용·공유(기존 R&D사업, XR, MDA 등) 할 수 있는 체계 및 플랫폼 구축

2)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AI 기반 CDX 데이터 체계 1식(아래사항 포함)
 -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체계 일원화 기술 1식(AI 기반 CDX 데이터 표준화 정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RAG모델 성능 등 포함)
 - 공개·비공개 데이터 권한 설계 및 보안관리 방안 1식

- AIOps 기반의 CDX 플랫폼 1식(아래 제시된 시스템 간 연계, H/W, S/W 포함)
 - 해양재난 상황 데이터 리니지 시각화 등 데이터 관리 시스템 1종
 - 엣지디바이스 등 다양한 해양재난 정보 AI 융합 시스템 1식
 - XR 교육훈련 및 MDA 플랫폼과 연계 방안 제시
- CDX 발전 방향 보고서
 - CDX 추진방향 중장기 로드맵 보고서 1식
 - CDX 실증을 위한 서비스 도출(2단계 기획연구용역) 보고서 1식
 - ※ 내역1, 2와 협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제출
- 기술개발 실적보고서(시스템 사양, 아키텍처 설계, 성능 검증 결과 등 포함)
- CDX사업 관련 AI·데이터 기술수준 보고서(국내외 기술동향, 유관기관 등 사례 분석 보고서, AI 활용 수준 등) 1식

3) 주요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AI기반 CDX 데이터	체계 구축	오토 라벨링 정확도	95% 이상	공인시험성적서	
		AI 학습데이터 구축률	20종 이상		
		데이터권한 보안처리률	95% 이상		
		현장데이터 융합률	95% 이상		
	품질성능향상	데이터 정합성	95% 이상		
		데이터 오류 검출률	90% 이상		
		데이터 자동 보정률	85% 이상		
AI기반 CDX 플랫폼	데이터 리니지 시각화	데이터 흐름 추적 정확도	90% 이상	공인시험성적서 수요처 평가 (상용화 솔루션 수준 이상)	
	AI 융합시스템	데이터 융합 정합성	95% 이상		
	관련 데이터 공유서비스 확대	데이터 전송률	90% 이상		
		시스템 연계 건수	3건 이상		
해양경찰청 R&D성과 제고		SCIE논문 건수	3건 이상	NTIS 등록 기준	
		특허등록 건수	2건 이상		

※ 제시된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및 성과지표는 최소요구조건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추가/구체화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에 따라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4) 주요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 신속한 해양재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CDX 데이터 체계 구축
 - 해양재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체계 일원화 기술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전환 및 라벨링 자동화 기술개발
 - AI 기술개발에 활용될 모든 형태의 해양재난 데이터* 조사·분석
 - * 각종 해양 정보, 관할별 지형지를 고유특성(정식명칭 및 이명 등) 및 비정형(음성, 문자 및 영상데이터 등) 데이터까지 포함.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화 처리 적용
 - ** 해양재난 데이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정보 기반의 데이터맵(Map) 형식으로 체계화
 - *** 현재 데이터 적재량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누적될 임의량 산출 포함
 -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의 데이터 변환 및 정제 기술개발
 - AI 기반 데이터 정형화 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 체계 정의
 - 해양상황별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 프로세스 정립 기술개발
 - *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구축을 위한 해양경찰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 절차 수립
 - 해양사고의 유형·대응 단계 및 관련 자원(업무프로세스)과 데이터 구조 및 관계 정의 등 요소 간의 해양상황별 연관성 체계화
 - 해양재난 데이터 표준 정의
 - 공개·비공개 데이터 구분 설계 및 관리 체계 개발
 - 데이터 민감도별 접근 권한 설계 및 상황 기반 동적 권한 관리
 - * AI로 데이터 내용 및 활용도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공개·비공개가 표출될 수 있도록 설계
- AIOps 기반의 CDX 플랫폼 개발
 - 해양재난 상황 데이터 리니지 시작화 등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메타데이터 저장 및 관리시스템 개발
 - 데이터 흐름 자동 추적 및 맵핑 엔진 개발
 - 실시간 데이터 계보 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
 - 데이터 이력 추적 기능 개발
 - 해양재난 상황별 AI 데이터 구조 및 관계 정의
 - 엣지디바이스 등 다양한 해양재난 정보 AI 융합 시스템 개발
 - 엣지디바이스 등 다양한 장비, 현장 수집 정보 등 실시간 빅데이터 융합체계 구축
 - 엣지디바이스 기반 데이터 수집·융합 기술개발
 -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중앙 시스템과 연계
 - 차세대 AP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고도화
 - ※ 시스템은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가 통합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
 - XR 교육훈련 및 MDA 플랫폼 등 연계 시스템 개발

-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마련
-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차세대 API 기반 해양재난 데이터 연계 공유 기술 개발
- 현재 구축된 해양경찰 정보시스템 중 가능한 범위 내 가상융합기술(XR)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해양재난현장 구현 서비스 연계
 - ※ 단, XR교육훈련 플랫폼* · MDA 플랫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R&D) 가상융합기술(XR)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 · 훈련 플랫폼 기술개발('23~'27/5년)
 - ** (정보시스템) 광역해양감시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 및 사고감지 데이터(AIS, R/D, V-Pass, E0, IR 등), 현장 해상 정보(기상, 해조류 등)를 실시간 학습 · 융합 · 분석 · 예측하는 플랫폼

내역사업/과제 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CD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5) 기타 조건

- 본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들*을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해야 하는바, 해당 내역 사업들에 대한 공동추진체계(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
 -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내역사업
-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개발 ”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의 총괄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내역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내역사업의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물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내역사업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내역사업에 개별 접수해야 함.
 - 전체 내역사업들을 포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개별 내역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이 모두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연구개발과제에서 구축된 연구 인프라는 해양경찰청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전문가, 데이터 보유기관, 시스템 연계부서(기관), 시범사업 수행부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성과(특허 등)의 국가소유로의 전환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중기예산(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7,410	510	3,400	3,500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추진 예정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내역2)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해양경찰청	사업명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전문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공모방식	지정공모	보안등급	일반과제
연구개발과제명	CDX 기반 인공지능 융합 핵심 기술개발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연도)	'25.4. ~ '27.12. 이내 ('25. 4. ~ '25. 12.)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연도)	23.9억원 이내 (25년 4.9억원 이내)
단계 연구개발기간	(1단계) '25.4. ~ '27.12. (2단계) 추후 결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필수 참여기관 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단계	개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재난은 상황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 및 지침, 규정 등이 다양하고, 특히 신종 해양재난 사고는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민간의 초기대 AI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해양재난 대응 등 전문적인 업무에 적용이 불가한 실정
 - ※ 신규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훈련, 점검 및 평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한 훈련평가, 절차 및 예방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역부족
 - * 해양경찰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별표3의 주요 유형(안보관련 4종, 주권관련 4종, 안전관련 4종, 오염관련 1종, 자체중요사건 4종 총 22종) 참고
- 과거 유사 해양사고 사례 분석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획득하기 어려워 핵심적인 업무에 필요 인력과 자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 발생
 - 수집되는 각종 해양재난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위한 해양재난 상황 판단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
- 해양재난 상황 전주기에 활용되는 훈련 지침과 대응·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AI Chatbot 등의 형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필요
 - 해양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세력의 위치 정보와 수집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위한 표준체계 구축 필요

2. 제안요구내용

1) 최종목표

-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및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개인비서) 서비스 구현·적용

2)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AI 기반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개인비서) 1식
 - ※ 해양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지원내용을 포함하며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최소 10종 (사고대응 전략 제공, 퍼포먼스 분석, 보고서 작성 등 포함) 이상의 서비스 제시
- AI 기반 멀티소스 비전 데이터 표준체계(공간정보) 1식
- AI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공간정보) 시스템 1식
- CDX 발전 방향 보고서
 - CDX 추진방향 중장기 로드맵 보고서 1식
 - CDX 실증을 위한 서비스 도출(2단계 기획연구용역) 보고서 1식
 - ※ 내역 1, 2와 협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제출
- 기술개발 실적보고서(시스템 사양, 아키텍처 설계, 성능 검증 결과 등 포함)

3) 주요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현장업무 지원강화 (AI 개인비서)	업무별 서비스	10종 이상	전문가 평가 (사용자학계산업계 5인 이상, 연 2회 이상)
	수요자 만족도	4점 이상	
현장 데이터 활용 강화 (AI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표준화율	90% 이상	공인시험성적서
	지오맵핑 된 데이터 구축	형태별 20종 이상	
	지오맵핑 인지·변환속도	20초 이내	
	분석 시각화 정확도율	90% 이상 (시각화 3종 이상)	
해양경찰청 R&D성과 제고	SCIE논문 건수	2건 이상	NTIS 등록 기준
	특허등록 건수	2건 이상	

※ 제시된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및 성과지표는 최소요구조건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추가/구체화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에 따라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4) 주요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AI개인비서) 개발
 - 해양재난 상황 유형별 AI 개인비서 시뮬레이션 개발(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
 - 기존 언어모델을 활용한 해양특화 LLM 개발(해양재난에 특화된 데이터 학습)
 - 상황 유형별 학습 데이터 증가 및 신규 데이터 발생에 따른 재학습 체계(컨티뉴어스 러닝)
구축(생신주기, 업데이트, 결과의 검증 체계 등)
 - ※ 사고사례 기반 생성된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한 결과 피드백 학습
 - 해양재난 상황별 지원 인공지능 모델별 안전성 검증 기준 수립

- AI 기반 멀티턴 지능형 에이전트 서비스의 결합 및 취약성 식별 시험(AI red-teaming test) 설계 및 결과 해석
- AI 기반 멀티소스 비전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 멀티소스 비전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지오맵 등 공간정보) 시스템 개발
 - 멀티소스 비전 데이터 표준 처리(지오맵핑) 설계
 - 해양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상, 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의 좌표정보 표준화(일원화) 체계 구축
 - 비정형 데이터 표준체계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황지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 기술 개발
- AI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공간정보) 기술 개발
 -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해양재난 시각화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 해양재난 업무별 AI 멀티모달 시각화 서비스 분석 모델 개발
 - * 멀티모달 데이터 표준 처리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분석모델 제시
- 향후 CDX 구체적 활용 및 추진방안(로드맵) 제시

5) 기타 조건

- 본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들*을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해야 하는바, 해당 내역 사업들에 대한 공동추진체계(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
“디지털 전환(CDX)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내역사업
- “해양재난분야 디지털 전환(CDX)을 위한 AI 융합기술개발 ”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의 총괄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내역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내역사업의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물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내역사업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내역사업에 개별 접수해야 함.
 - 전체 내역사업들을 포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개별 내역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이 모두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연구개발과제에서 구축된 연구 인프라는 해양경찰청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전문가, 데이터 보유기관, 시스템 연계부서(기관), 시범사업 수행부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성과(특히 등)의 국가소유로의 전환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중기예산(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2,390	490	1,000	900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추진 예정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3] 별첨(붙임 4, 5) 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붙임4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1-2의 별첨자료는 해당시 작성)	필수
	서식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4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필수
	서식5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6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해당시
	서식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붙임5	참고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과제 신청시 참고
	참고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